#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6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김선교·서천호·김상훈

김위상 • 구자근 • 박덕흠

강대식 · 김성원 · 최수진

서일준 · 이헌승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 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8조 등)
- 나.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2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의2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 중지역"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과 운용"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구역: 농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을 "용수원"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지 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 중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 지역"으로, "관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에"를 "농업생산집중지역에"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의의 지정의건, 절차, 기준및"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절차"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로, "사항의 변경은"을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 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을 "농업생산집중지역을 지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농업생산집중지역 실태조사"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를 "농업생산집중지역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을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을 "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철도, 그 밖에"를 "철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어촌"을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촌"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밖의"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생산집중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생산집중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를 "(농업생산집 중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 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과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정보·농업진흥지역"을 "정보·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각각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	
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3
제28조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u>	<u>농업생산집중</u>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8조에 따른 <u>농업진흥</u>	9의2 <u>농업생산</u>
<u>지역</u>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	집중지역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	
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절 <u>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u>	제1절 <u>농업생산집중지역의</u>
<u> </u>	지정과 운용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제28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

특별시장 • 광역	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5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
다)는 농지를 효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u>농업진</u>
<u>흥지역</u> 을 지정현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u> 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 <u>농업진흥구역: 농업</u>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나. (생략)
- 2. <u>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u> 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 제 <u>상</u>) 제28조에 따른 <u>농업진흥지</u> 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 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u>정)</u> ①
<u>으</u> 업생산집중지역
② <u>농업생산집중</u> <u>지역</u>
· 1. <u>농업</u>
 가.·나. (현행과 같음) 2. <u>용수원</u>
29조 <u>(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u> 대상) <u>농업생</u> 산집중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 조차) ①시·도지사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 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u>농업진흥지역</u>을 지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u>농업진흥지역</u>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u>관계</u>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 획관리지역이 <u>농업진흥지역에</u>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u>농업진</u> 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세30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
절차) ①
<u>농업생산집중지역</u>
,
<u>농업생산집중지역</u>
<u>농립</u> 초시시프브 자리 미 코게
축산식품부 장관 및 관계
· ③
<u>농업생산집중지역에</u>
<u>농업생산</u>
<u>집중지역 지정</u>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u>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u>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u>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원래의 <u>농업진흥지역 또는 용</u>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④ 농업생산집중지역의 지정요
<u>건, 절차, 기준 및</u>
제31조(농업생산집중지역의 해
<u>제)</u> ①
<u> 농업생산집중지역을</u>
<u>농업생산집</u>
<u>중지역</u>
,
② <u>농업생산집중</u>
지역의 해제
<u>농업생산집중지역으</u>
로 환원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시・도별 농업생산집중지
역 목표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
역 해제
<u>사항에 대해서는</u>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 다.

<u><신</u>설>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 기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u>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u>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 저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	•
	도지사로부터 농업생산집	중	기
	역의 해제 승인 요청이	있	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		
	·····································		
제	  31조의2(주민의견청취)		
.,			
	농업생산집중지역을	괴	정
	<u> </u>		
	<u> </u>		
	1. • 2. (현행과 같음)		
껡	31조의3(실태조사) ①		
` '	017-40(5 417-11) (A)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28조에 따른 <u>농업진흥지</u>역의 실태조사
- 3. 4. (생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 항제2호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u>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u>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 당 <u>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u> 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 다.
- ③ (생략)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u>직접적으로 관련된</u>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1. (현행과 같음)
2 <u>농업생산집</u>
<u>중지역</u>
3.・4. (현행과 같음)
②
<u>농업생산집중</u>
지역 실태조사
<u>농업생산집중지역</u>
<u>농업생산집중지역을</u>
<u>.</u>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생산집중지
<u>역</u>
<u>관련된</u>
1. (현행과 같음)
2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3. 4. (생략)
-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 え
- 6. (생략)
- 7. 도로, 철도<u>, 그 밖에</u>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8. (생략)
-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 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의 설치

<신 설>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 없다.

<u>농업인</u>	또는	농촌	주민-	

- 3. 4. (현행과 같음)
- 5. ---- 제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
  - 6. (현행과 같음)
- 7. --- 철도 등 -----
  - 8. (현행과 같음)
- 9.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어 ---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밖의 -----

- 10.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 설의 설치
-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 업생산집중지역에 걸쳐 있으면 서 농업생산집중지역에 속하는

-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u>토</u> <u>지이용행위</u>
-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 의 설치
- ③<u>농업진흥지역</u>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집중지역 행위제 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농업생산집중지역
<u>제1항</u>
④ <u>농업생산집중지역</u>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 에 대하여만 <u>제1항과 제2항</u>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1. ~ 4. (생략)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 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 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 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 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 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업</u> 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 야 한다.

제33조의2<u>(농업진흥지역의 농지</u> <u>매수 청구)</u> ① <u>농업진흥지역</u>의

<u>제1항</u>
<u>.</u>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농업생산집중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 <u>농업생</u>
<u> 산집중지역</u>
② 누업
 생산집중지역
제33조의2(농업생산집중지역의
<u> 농지매수 청구)</u> ① <u>농업생산집</u>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 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생 략)

-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1. · 1의2. (생략)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u>중지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의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② (생략)
  -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u>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 ⑥ (생략)
  -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 금액으로 하되, <u>농업진흥</u>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 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 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4. (생 략)
  - ⑧ ~ ⑤ (생 략)
-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 립 등) ① (생 략)
  -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② (현
행과 같음)
3
<u>농업생산집</u>
중지역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7
<u>농업생산</u>
집중지역과 농업생산집중지역
 1. ~ 4. (현행과 같음)
1. 4. (현정의 끝급) ⑧ ~ ① (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
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b>1</b>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략)
-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 6. 7.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하다.
  - 1. ~ 3. (생략)
  -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 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 6. 7. (생략)
  - ④ ~ ⑧ (생 략)
-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 하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4. (현행과 같음)
- 5. 농업생산집중지역-----
- 6. · 7.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3. (현행과 같음)
- 4. ----- 농업생산집중지
- 5. 관할구역 내 <u>농업진흥지역</u> 5. ----- <u>농업생산집중지</u>
  - 6. · 7.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① (현행과 같음)

(2)	 
	 정보•
농업생산집중지역	 

#### ③ ~ ⑥ (생 략)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 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 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 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 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 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 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 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8조(벌칙) ① <u>농업진흥지역</u>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 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8조(벌칙)	1	<u>농업생</u>	]산집	중지
<u>역</u>				

를 받	은 자	는 5년	<u></u> 이하	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의 개별	결공시지
가에	따른	토지기	가액에	해당하
는 금	남액 여	이하의	벌금ㅇ	에 처한
다.				

② <u>농업진흥지역</u>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 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② <u>농업생산집중지역</u>
·.
③ (현행과 같음)